

농(축)협조합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

제1영역(협동조합의 원칙과 농협법의 이해)의 핵심 내용 정리 (2)

○ 지역농협의 기관

구분	구성	주요 기능	
의결 기관	총회	조합원	임원선출 및 해임, 정관변경, 합병, 해산, 분할, 조직변경, 조합원 제명, 사업계획 수립, 수지예산 편성,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, 규약의 제·개정 폐지 등
	대의원회	조합장, 대의원 50인 ~200인	해산,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, 조합장 선출, 임원 해임, 합병을 제외한 사항(이외의 기능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음)
	이사회	조합장, 이사 7인 ~25인	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, 법정적립금 사용, 차입금의 최고한도, 경비부과와 징수방법,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경미한 사항 변경, 조합장·상임이사의 업무 집행상황 감독, 간부직원의 임면 등
집행 기관	상임 조합장	조합장	조합을 대표하여 업무집행
	비상임 조합장	조합장, 상임이사	조합장은 조합을 대표,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

○ 감사의 법적 성격

- 법정기관(필치기관), 독임(獨任)기관, 상설기관임
- 필요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나 감사권 행사가 가능

○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

- 감사는 1인을 상임, 2인 모두를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나, 감사 1인을 상임으로 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함
-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가 사고나 궤위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수행하게 됨
- 비상임감사의 행사 권한은 그 실효에서 상임감사와 동일
- 권한 행사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
- 감사 결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, 조합장은 그 내용을 총회(대의원회)에 제출하여 주지시켜야 함

○ 조합 감사의 직무

-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감사(농협법 제46조 제6항)
 - 전문적인 회계감사 필요시, 중앙회에 회계감사 의뢰 가능
-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사실 보고(농협법 제46조 제7항)

-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(농협법 제46조 제8항)
-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한 후 주사무소에 비치해야 함(농협법 제71조)
- 상법 준용에 따른 직무(농협법 제46조 제9항, 상법 제412조의4, 413조, 413조의2)
 - 자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, 조사
 - 총회에 제출한 의안과 서류를 조사, 법령·정관 위반이나 부당사항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총회에 의견 진술
 - 감사록 작성
- 기타 대표권, 임시총회 소집권, 의장직무대행권, 위법행위 유지(留止) 청구권

○ 조합장의 상임·비상임 여부, 상임이사의 필수 설치 여부 등

자산 규모	조합장	상임이사
2,500억원 이상	비상임	반드시 두어야 함(1~2명)
1,500억원 이상 ~2,500억원 미만	상임	반드시 두어야 함(1~2명)
1,500억원 미만	상임	전무, 상무 체제로 운영

○ 임원의 결격사유(농협법 제49조)

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농협법 제164조 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농협법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(歸責事由)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(5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)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(5백만원 이상의 채무(보증채무를 제외한다)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)을 초과하여 채무 상황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
-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

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

• **경제사업의 경우** :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, 일반 지역농협은 조합원 평균 이용금액의 40% 이상, 특광역시 소재 지역농협은 20% 이상

• 예·적금, 대출금, 보험료의 경우 : 조합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, 일반 지역농협은 조합원 평균 이용금액의 20% 이상, 특광역시 소재 지역농협은 30% 이상

※ **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**

- 임원 선거일공고일 1년(혹은 2년)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 까지임
- 조합원 1인당 평균 금액기준 :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(혹은 2회계연도)임

※ **유의해야 할 사항**

- 예·적금, 대출금, 납입보험료 등 신용사업 관련 조항을 1가지만 도입할 경우, 경제사업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신용사업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
- 그러나 신용사업 중 2가지 이상을 도입할 경우, 경제사업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며 해당 신용사업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이 주어짐
- 그러므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 및 임원(조합장, 이사, 감사)인 경우, 조합의 정관을 숙지하여 자신의 경제사업 및 예·적금, 대출금, 보험료의 이용금액을 매년 꼼꼼히 점검해야 함(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현직 임원이라도 자동해임됨)

○ **조합 사업과 실질적인 경영 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(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 2, 조합 정관례 제56조 제2항 제12호)**

- 신용사업 : 조합 및 농협중앙회(금융지주 및 산하 자회사) 신용사업과 관련된 사업
 - 일반은행업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, 저축은행, 우체국, 보험업, 대부업 등
- 경제사업 : 조합 및 농협중앙회(경제지주 및 산하 자회사)의 경제사업과관련된 사업 중 아래에 열거된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는 이사회가 판단
 - "비료관리법"에 의한 비료업자
 - "농약관리법"에 따른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한 자(승계자를 포함한다)
 - "조세특례제한법"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용 기자재를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
 - "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"에 따른 석유판매업자
 - "사료관리법"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
 - "종자산업법"에 따른 종자업자
 - "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" 제4조 제4항의 생산자단체
 - "양곡관리법"에 따른 양곡판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
 - "축산물위생관리법"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
 - "인삼산업법"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(인삼조합에만 해당)
 - "장사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

※ **위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조합 경제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경영 금지규정에 해당되어 임원 및 대의원 진출 불가**

※ 단, "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경영 금지규정에서 제외되었음

○ **조합 임원선거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**

- 선거공보의 배부
- 선전 벽보의 부착
-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
-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.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**는 금지**)
- 도로·시장 등 농협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
- 위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만 할 수 있음(조합 정관례 제77조 제6항)

○ **기부행위의 제한(조합 정관례 제77조의 2)**

- 임원선거 후보자,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(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)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)이나 그 가족,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(기부행위)를 할 수 없음
- 누구든지 위의 기부행위를 약속, 지시, 권유, 알선, 요구할 수 없음
- **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 조합의 경비를 명기해야 함**
- **위의 조항에 따라 축의 부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**

○ **임원의 임기**

- 조합장 및 조합원인 이사 : 4년
- 조합원이 아닌 이사 : 2년
- 감사 : 3년
-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(총 12년 재임 가능)

제1영역의 예제를 풀어봅시다

1. **아래에 제시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?**

-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②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③ 농협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(歸責事由)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④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해진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황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

2. **아래의 감사(監事)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**

- ① 법정기관이며 필치(必置)기관이다.

